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제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44호 2022. 12. 6.(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752호(연수2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 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753호(대동월드 상가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759호(대우삼환 아파트 상가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18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7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26

회							
람							

연수2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 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 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행정예고명 : 연수2동 상가일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목적
 - 간판개선사업으로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사실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3.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12. 6 ~ 2022.12.26 (20일간)

5. 예고방법 : 구보, 區 인터넷 홈페이지, 區·洞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전국 시·군·구

6. 의견제출

-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기한 : 2022.12. 6 ~ 2022.12.26(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민원접수)
- 제출기관
 - 주소 : 인천광역시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6층 도시계획과
 - 전화 : 032-749-8632, FAX : 032-749-8639

붙임 1. 의견서 1부.

2.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1부. 끝.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행정예고명	연수2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예고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행정예고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연수2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완화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광고문화 조성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완화할 수 있는 정비시범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위 치 : 연수구 연수2동 ① ~ ⑥ 구역(면적 범위) 내

- ① : 연수동 612 (용담로 125번길 54)
- ② : 연수동 619-1 (용담로149번길 55)
- ③ : 연수동 624-6 (용담로 147)
- ④ : 연수동 624-11 (샘말로 56)
- ⑤ : 연수동 618-9 (샘말로88번길 1)
- ⑥ : 연수동 612-8 (샘말로87번길 20)

2. 구 역 : 별도 도면 표기 구역【붙임1】

제3조(표시방법의 강화 또는 완화 내용)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4조부터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간판의 총수량)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1개와 돌출간판 1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도로의 굽은 지점(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로가 2개 이상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거나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의 경우 간판 1개를 추가(건물 3면이 접하는 3곡각의 경우 각 면에 표시 가능)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의료시설 및 약국에 한해 1면의 면적이 0.36㎡ 이하,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80cm 이내의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미용업소의 경우 세로 150cm 이하, 지름 30cm 이하의 규격으로 싸인볼을 추가 설치 가능하다.

제5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등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을 비방하거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음란 및 저속한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 ② 광고물의 주표기 내용은 업소명이나 브랜드명 또는 상징 도형으로 제한하고, 보조표기 내용에는 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③ 광고물 등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한 사용을 금지하며, 주변의 다른 광고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물 등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색채 또는 간접 조명에 의한 색채효과 등을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유연성 원단(플렉스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을 사용한다.

⑤ 광고물 등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물 등은 설치와 변경 또는 제거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제거할 때 흔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 및 신고 등)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 이하의 벽면이용간판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벽면이용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1층에 설치하는 간판은 판 형태의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당해 폭의 이내, 세로크기는 1.0m 이내, 채널의 크기는 60cm 이내로 한다.
- ②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은 바 형태의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당해 점포 폭의 80%이내, 세로크기 30cm이내, 채널의 크기는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크기 이내로 한다.

(건물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 채널 세로크기 계산식) $55\text{cm} + (\text{해당 층수} - 1) \times 5\text{cm} \text{ 이내}$
--

- ③ 상징도형의 경우에는 주요 표시내용 문자의 120% 이하로 한다.
- ④ 간판의 돌출 폭은 건물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한다.
- ⑤ 아크릴 박스는 가로 40cm 이내, 세로 1m 이내,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30cm 이내로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간판 양 끝 단으로 하며 하나의 간판에 최대 2개까지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간판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m 이상 이격하고, 간판의 바깥쪽 끝 부분은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로 한다.
- ② 간판의 규격은 1면의 면적 0.36m^2 이내, 두께 20cm 이내의 원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한다.
- ③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각 표시물의 규격을 통일시켜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① 원칙적으로 지주간판의 설치를 금지하나 건물 면이 다른 건물에 의해 가려져 돌출간판 설치가 무의미한 건물의 경우 연립형 또는 단독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주이용간판은 연립형으로 업소 당 표시면적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4m 미만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연립형 또는 일직선상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각 표시물의 규격을 통일시켜야 한다.
- ③ 간판의 규격은 1면의 면적이 0.36m^2 이하로 한다.

제10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점멸방식의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으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전기배선, 컨버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의 특례)

건물의 특성 및 간판의 디자인 상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 및 조례 표시방법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 ① 건물주(소유주) 등은 건축물(상가 등)을 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옥외광고물 고시 구역임을 명시하여 세입자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고시지역 내 모든 간판을 설치할 경우 연수구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고시일 시행 이전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③(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붙임1】

정비구역 지정현황

○ 위치도



연수2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

대동월드 상가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 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행정예고명 : 대동월드 상가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목적
 - 간판개선사업으로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사실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12. 6 ~ 2022.12.26 (20일간)

5. 예고방법 : 구보, 區 인터넷 홈페이지, 區·洞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전국 시·군·구

6. 의견제출

-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기한 : 2022.12. 6 ~ 2022.12.26(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민원접수)
- 제출기관
 - 주소 : 인천광역시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6층 도시계획과
 - 전화 : 032-749-8632, FAX : 032-749-8639

붙임 1. 의견서 1부.

2.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1부. 끝.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행정예고명	대동월드 상가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예고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행정예고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2>

대동월드 상가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완화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광고문화 조성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완화할 수 있는 정비시범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위 치 : 연수구 연수동 633번지
2. 구 역 : 별도 도면 표기 구역【붙임1】

제3조(표시방법의 강화 또는 완화 내용)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4조부터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간판의 총수량)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1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도로의 굽은 지점(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로가 2개 이상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거나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의 경우 간판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의료시설 및 약국에 한해 1면의 면적이 0.36m² 이하,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80cm 이내의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미용 업소의 경우 세로 150cm 이하, 지름 30cm 이하의 규격으로 싸인볼을 추가 설치 가능하다.

제5조(광고물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등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을 비방하거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음란 및 저속한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 ② 광고물의 주표기 내용은 업소명이나 브랜드명 또는 상징도형으로 제한하고, 보조표기 내용에는 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③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한 사용을 금지하며, 주변의 다른 광고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물 등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색채 또는 간접 조명에 의한 색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유연성 원단(플렉스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을 사용한다.
- ⑤ 광고물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물 등은 설치와 변경 또는 제거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제거할 때 흔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커튼월[Curtain Wall(비내력 외벽)]공법으로 마감된 유리 벽면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6조(허가 및 신고 등)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5m² 이하의 벽면이용간판은 신고를 배제
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벽면이용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건물 1층 간판은 붙임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디자인된 베이스 판 위 바 형태의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바 형태의 간판 가로크기는 당해 점포 폭 이내, 세로크기는 30cm 이내로 한다.
- ③ 간판 채널의 크기는 60cm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상징도형의 경우에는 주요
표시내용 문자의 120% 이하로 한다.
- ④ 간판의 두께는 건물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설치한다.
- ⑤ 건물 정면 연립형 간판의 경우 2층 이상의 업소가 설치할 수 있으며, 기 설치
되어있는 게시 틀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제8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제10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제11조(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광고물(시트지) 설치를 금지한다.

제12조(선전탑,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선전탑, 애드벌룬 등의 설치를 금지한다.

제13조(현수막, 벽보의 표시방법) 현수막, 벽보의 설치를 금지한다.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점멸방식의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으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전기배선, 컨버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 ① 건물주(소유주) 등은 건축물(상가 등)을 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옥외광고물 고시 구역임을 명시하여 세입자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고시지역 내 모든 간판을 설치할 경우 주민협의체(상가번영회) 및 연수구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후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개선사업 완료된 형태를 준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16조(적용의 특례)

건물의 특성 및 간판의 디자인 상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 및 조례 표시방법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고시일 시행 이전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③(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붙임1】

정비구역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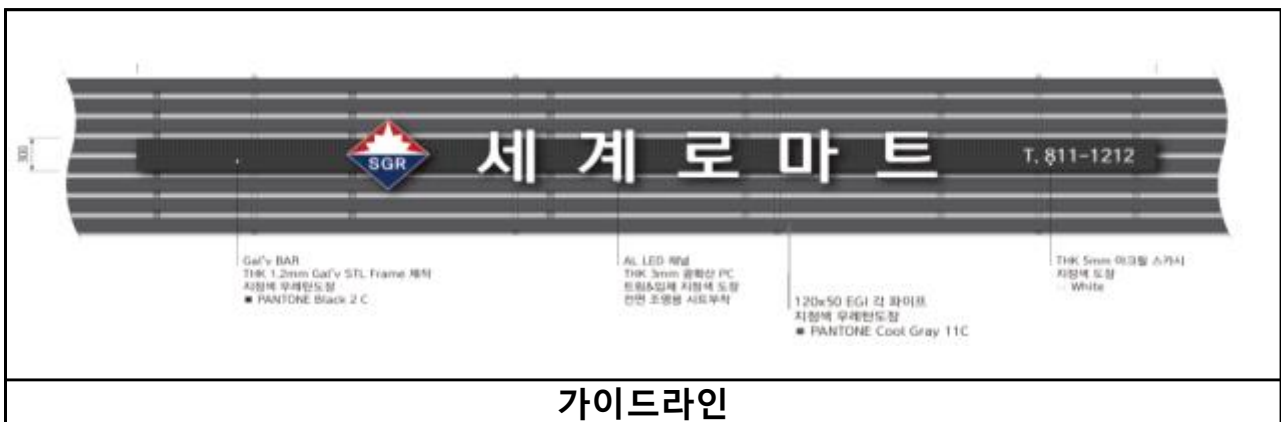
○ 위치도



대동월드 상가 (연수동 633번지)

【붙임2】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대우삼환 아파트 상가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 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 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행정예고명 : 대우삼환 아파트 상가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목적
 - 간판개선사업으로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사실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12. 6 ~ 2022.12.26 (20일간)

5. 예고방법 : 구보, 區 인터넷 홈페이지, 區·洞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전국 시·군·구

6. 의견제출

-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기한 : 2022.12. 6 ~ 2022.12.26(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민원접수)
- 제출기관
 - 주소 : 인천광역시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6층 도시계획과
 - 전화 : 032-749-8634, FAX : 032-749-8639

붙임 1. 의견서 1부.

2.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1부. 끝.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행정예고명	대우삼환 아파트 상가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예고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행정예고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2>

대우삼환아파트 상가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완화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품격있는 광고문화 조성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완화할 수 있는 정비시범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위 치 : 연수구 동춘동 925-7번지
2. 구 역 : 별도 도면 표기 구역【붙임1】

제3조(표시방법의 강화 또는 완화 내용)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4조부터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간판의 총수량)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1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도로의 굽은 지점(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로가 2개 이상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거나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의 경우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의료시설 및 약국에 한해 1면의 면적이 0.36m^2 이하,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80cm 이내의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미용업소의 경우 세로 150cm 이하, 지름 30cm 이하의 규격으로 싸인볼을 추가 설치 가능하다.

제5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등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을 비방하거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음란 및 저속한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 ② 광고물의 주표기 내용은 업소명이나 브랜드명 또는 상징 도형으로 제한하고, 보조표기 내용에는 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③ 광고물 등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한 사용을 금지하며, 주변의 다른 광고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물 등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색채 또는 간접 조명에 의한 색채효과 등을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유연성 원단(플렉스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의 사용한다.
- ⑤ 광고물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물 등은 설치와 변경 또는 제거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제거할 때 흔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 및 신고 등)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 이하의 벽면이용간판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벽면이용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1층 간판은 업소 폭 이내의 판 형태의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2층 이상은 바 형태의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 점포 폭 이내로 하며 1층 간판의 세로크기는 1.2m이내, 2층 이상의 세로크기는 30cm 이내로 한다.
- ③ 1층 간판 채널의 크기는 60cm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상징도형의 경우에는 주요 표시내용 문자의 120% 이하로 한다.
- ④ 2층에 설치하는 간판 채널 크기는 60cm 이내, 3층에 설치하는 간판 채널 크기는 70c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 ⑤ 간판의 두께는 건물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설치한다.
- ⑥ 건물 정·측면부의 연립형 간판은 지하 및 1층 내부(아케이드)업소가 설치 할 수 있으며, 기 설치된 게시 틀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제10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제11조(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광고물(시트지) 설치를 금지한다.

제12조(선전탑,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선전탑, 애드벌룬 등의 설치를 금지한다.

제13조(현수막, 벽보의 표시방법) 현수막, 벽보의 설치를 금지한다.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점멸방식의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으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전기배선, 컨버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 ① 건물주(소유주) 등은 건축물(상가 등)을 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옥외광고물 고시 구역임을 명시하여 세입자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고시지역 내 모든 간판을 설치 할 경우, 주민협의체(상가번영회) 및 연수구 옥외 광고물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개선사업 완료된 형태를 준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16조(적용의 특례)

건물의 특성 및 간판의 디자인 상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 및 조례 표시방법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고시일 시행 이전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③(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붙임1】

정비구역 지정현황

○ 위치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2. 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지정취지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출입문(절대보호구역) 5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2022년 12월 5일

3.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지정대상	개소	지정범위	비고
1	도시공원	2	공원면적 전체	붙임 문서 참조
2	학교출입문 (절대보호구역)	1(2)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	
3	버스정류소	55	정류소 시설물로부터 10미터이내	

※ 향후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구역) 소멸 시 자동 금연구역 해제

※ 향후 금연구역 지정 대상 명칭 및 관내 위치 변경 시 자동 금연구역 지정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2023년 3월 5일부터

나.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5. 고시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749-8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구역 추가지정 현황 1부. 끝.

[붙임]

2022년 금연구역 조사결과 추가지정(예정) 대상

○ 도시공원 : 2개소

(2022.10.31.기준)

연번	공원명	위치	면적
1	물푸레공원(청학6호)	청학동 1012 일원	309.1m ²
2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4호 근린공원	송도동 187-6	36,436.5m ²

○ 학교 출입문(절대보호구역) : 2개소(1개 학교)

(2022.10.31.기준)

연번	구분	학교명	소재지	출입문 수	비고
1	중학교	인천현송중학교	연수구 아카데미로312번길 84	2	

○ 버스정류소 : 55개소

(2022.10.31.기준)

연번	정류소ID	정류소명칭	동별	비고
1	38567	능허대공원	옥련1동	쉼터
2	38569	동춘동차고지	동춘2동	쉼터
3	38652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203동)	송도4동	쉼터
4	38132	럭키아파트	옥련2동	쉼터
5	38610	민방위교육장	동춘2동	쉼터
6	38721	소리공원(하모니로)	송도1동	쉼터
7	38722	소리공원(하모니로)	송도1동	쉼터
8	38707	송도sk뷰	송도5동	쉼터
9	38710	송도sk뷰	송도5동	쉼터
10	38711	송도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2단지	송도3동	쉼터
11	38663	송도누리공원	송도3동	쉼터
12	38664	송도누리공원	송도3동	쉼터
13	38699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송도4동	쉼터
14	38698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송도4동	쉼터
15	38719	송도더샵그린워크3차18블럭	송도2동	쉼터
16	38700	송도더샵마스터뷰22단지(2202동)	송도4동	쉼터
17	38712	송도더샵마스터뷰22단지(2202동)하행	송도4동	쉼터
18	38696	송도더샵마스터뷰22단지(정문)	송도4동	쉼터

19	38697	송도더샵마스터뷰22단지(하행)	송도4동	쉼터
20	38694	송도더샵마스터뷰23단지(정문)	송도4동	쉼터
21	38695	송도더샵마스터뷰22단지	송도4동	쉼터
22	38749	송도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	송도2동	쉼터
23	38175	송도채석장	옥련2동	쉼터
24	38702	송도체육센터	송도3동	쉼터
25	38701	송도체육센터	송도3동	쉼터
26	38661	송도컨벤시아남문	송도1동	쉼터
27	38625	송도파크레인동일하이빌	동춘1동	쉼터
28	38538	송도파크레인입구	동춘1동	쉼터
29	38539	송도파크레인입구	동춘1동	쉼터
30	38628	송도파크자이	동춘1동	쉼터
31	38584	송학동지아파트	옥련2동	쉼터
32	38585	송학동지아파트	옥련2동	쉼터
33	38469	쌍용아파트	옥련1동	쉼터
34	38146	옥련초등학교	옥련2동	쉼터
35	38143	우성아파트	옥련1동	쉼터
36	38709	웰카운티2단지	송도1동	쉼터
37	38609	인천박문초등학교	동춘2동	쉼터
38	38608	인천박문초등학교	동춘1동	쉼터
39	38566	인천해양과학고	옥련2동	쉼터
40	38755	재능대송도캠퍼스	송도3동	쉼터
41	38509	청학사거리	청학동	쉼터
42	38717	캠퍼스타운역(3번출구)	송도1동	쉼터
43	38255	풍림아파트	연수3동	쉼터
44	38718	해돋이공원	송도1동	쉼터
45	38729	해돋이도서관	송도1동	쉼터
46	38730	해돋이도서관	송도1동	쉼터
47	38746	현송중학교	송도4동	쉼터
48	38747	현송중학교	송도4동	쉼터
49	38658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후문)	송도4동	쉼터
50	38656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후문)	송도4동	쉼터
51	38655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1차입구	송도4동	쉼터
52	38657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201동)	송도4동	쉼터
53	38659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201동)	송도4동	쉼터
54	38715	힐스테이트송도더테라스(정문)	송도5동	쉼터
55	38716	힐스테이트송도더테라스(정문)	송도5동	쉼터

※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 소멸 시 자동 금연구역 해제

※ 금연구역 지정 대상 명칭 및 관내 위치 변경 시 자동 금연구역 지정